

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4. 24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338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4. 12. 강남구청장(감사담당관)

나. 상정의결

-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4. 24.)
“수정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국장 : 이호현)

가. 제안이유

-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(안 제3조~제4조)
-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(안 제5조~제6조)
- 구정 청렴시책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(안 제7조)
- 관련 기관·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-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구정 청렴시책사업 관련 포상 등(안 제10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공공기관의 책무), 제7조(공직자의 청렴의무)
- 예산조치 : 2024년도 예산 미반영
-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가족정책과, 감사담당관
- 기 타
 - 1) 입법예고(2024. 2. 29. ~ 2024. 3. 20.) 결과, 일부 조문을 법률용어 체계상 정확한 표현으로 부분적으로 정비함.
 - 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3) 부패영향평가: 특기할 사항 없음
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특기할 사항 없음(분석평가 완료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- 본 안건은 강남구청장 소속 직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통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제정 조례안임.
- 평가결과 강남구는 종합청렴도가 3개 등급 상승하였고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청렴노력도가 2개 등급 하락하였음.
-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제1호 중 “공직자 등”은 <사례>¹⁾와 같이 “공직자등”(이하 모두 같음)으로 규정하는 것이 <법령입안기준>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 나목 중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‘공사’는 없으며 다목의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직 관리 규정」에는 청원경찰 및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으나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가목²⁾ 중 ‘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

1) <사례>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공직자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.
3. “금품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2) 국민권익위 <답변자료>

-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"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, 복무, 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"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바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생,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, 농어촌의료법 제3조에 따른 공중보건 의사, 청원경찰법 제5조에 따른 청원경찰 등이 이에 해당함

된 사람’에는 청원경찰이 포함되는 바 이들은 모두가 단체장의 채용 및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범주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여짐.

- 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제1항 중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본계획³⁾이라는 용어는 중장기계획을 의미함으로써 종합계획, 추진계획, 집행계획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.
-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를 통하여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선심성 기부행위로 「공직선거법」에 저촉될 소지는 없는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<사례>⁴⁾와 같이 동일한 강남구조레이므로 의회직원, 의회사무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및 청원경찰도 포함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

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3) 기본계획 <법령입안심사기준>

- 기본계획은 근거 법령에 따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기관이 정책을 종합·조정 하여 수립하는 중장기적 계획이고,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단기적 계획임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규정할 때에는 수립권자, 수립사항, 수립시기, 주기, 수립절차 등을 규정해야 함.

4) <사례>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직자”란 경기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.

가. 공무원(경기도의회 의원은 제외한다)

나. 도 본청, 소속기관(직속기관·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의회사무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

다. 청원경찰

라. 청원산림보호직원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.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. 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

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
제338호

제안일자 : 2024.4.24.

제안자 : 행정재경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법령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의 용어 수정.
- 안제2조(정의)에 해당하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조문 수정 및 신설

2. 수정주요내용

- 입법형식 요건에 맞게 조문 정비(안제2조~안제5조, 안제7조, 안제10조)
- 조문 내용 수정(안제2조)

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 “공직자 등” 이란” 을 “ “공직자등” 이란” 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공사·공단” 을 “공단” 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「청원경찰법」에 의한 청원경찰

안 제3조 중 “공직자 등” 을 “공직자등” 으로 한다.

안 제4조의 제목 “(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)” 를 “(공직자등의 청렴 의무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공직자 등” 을 “공직자등” 으로 한다.

안 제5조의 제목 “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” 을 “(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 ” 을 “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 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본계획” 을 각각 “추진계획” 으로 한다.

안 제7조 중 “공직자 등” 을 “공직자등” 으로 한다.

안 제10조제1항 중 “공직자 등” 을 “공직자등” 으로 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(추진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립하는 추진계획부터 적용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공직자 등</u>”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강남구가 설립한 <u>공사·공단</u> 및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강남구에서 출자·출연한 기관 등의 임직원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다.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직 관리 규정」에 따른 공무원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<u>공직자 등</u>이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<u>공직자등</u>”이란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(원안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----- <u>공단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다. 「<u>청원경찰법</u>」에 의한 <u>청원경찰</u></p> <p>라. (원안 다목과 같음)</p> <p>2.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----- ----- - <u>공직자등</u>-----</p>

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)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어떠한 부패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~ 4. (생략)

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·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.

제7조(구청 청렴시책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) 구청장은 구청 청렴시책사업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

-.

제4조(공직자등의 청렴 의무) 공직자등-----

-----.

제5조(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-----
-----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 -----
-----.

② 추진계획-----
-----.

1. ~ 4. (원안과 같음)

③ ----- 추진계획 -----

-.

제7조(구청 청렴시책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) -----

-----공직자

(공직자 등을 포함한다)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모전이나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10조(포상 등) ① 구청장은 구정 청렴시책사업에 관하여 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직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부칙

제2조(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)

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.

등-----

-----.

제10조(포상 등) ① -----

----- 공직자등-----

-----.

② (원안과 같음)

부칙

제2조(추진계획에 관한 적용례)

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립하는 추진계획부터 적용한다.

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직자등”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 중 강남구 본청·보건소·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

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강남구가 설립한 공단 및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강남구에서 출자·출연한 기관 등의 임직원

다. 「청원경찰법」에 의한 청원경찰

라.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관리 규정」에 따른 공무원

2. “부패행위”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직자등의 청렴 의무)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어떠한 부패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제5조(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
2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3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·추진과제
4.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·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 시행)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“구정 청렴시책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교육 및 홍보 사업
2. 청렴도 평가·조사 등 청렴도 향상 사업
3.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·설문조사
4. 부패방지시스템 구축·운영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구정 청렴시책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) 구청장은 구정 청렴시책사업

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(공직자등을 포함한다)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모전이나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)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)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시행, 제7조에 따른 공모전 또는 홍보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함에 있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하고, 성명, 소속, 전화번호 등은 해당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·이용하여야 한다.

제10조(포상 등) ① 구청장은 구정 청렴시책사업에 관하여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직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공모전, 홍보 행사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추진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립하는 추진 계획부터 적용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구정 청렴시책사업 및 관련 행사 추진 시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3항제1호
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“한시적”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.)

3. 미첨부 사유(관련자료)

- 2024년도 청렴정책팀 총 예산액 : 82,924천원

4. 작성자

- 감사담당관 행정8급 도미경(02-3423-5133)